IMO 제28차 총회(Assembly)

Ⅰ. 일반사항

○ 회 의 명 : IMO 제28차 총회(Assembly)
○ 기간/장소 : '13. 11. 25~12. 4(10일간)
IMO Headquarters, 영국 런던
* 제27차 특별이사회는 총회전 11. 21~22, 제111차 이사회는 '13. 12. 4 총회 직후 개최
○ 참 석 자 : KST 해사안전연구센터 김주환

Ⅱ. 주요 의제 목차

1. [의제 4]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
2. [의제 7] 제27차 총회 이후 기구 업무 현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사항
3. [의제 8] 전략, 계획 및 개선
4. [의제 9]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5. [의제 10] 해사안전위원회(MS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6. [의제 11] 법률위원회(LEG)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7. [의제 1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8. [의제 13] 기술협력위원회(T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9. [의제 14]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10. [의제 15] 국제협약 개정안 검토
11. [의제 16] 2012년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 외교회의 결과 보고
12. [의제 17] IMO 강제협약 내 행정요건에 대한 정기적 검토에 관한 총회 결의서에 따른 경과 보고
13. [의제 19] 자원관리 – '14~'15년 결과기반 예산
14. [의제 21] 외부 기구와의 관계
15. [의제 24]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

Ⅲ. 주요의제 논의경과 및 회의결과

의제 4	IMO 협약 제61조의 적용

☐ **의제 주요내용**
○ 28차 총회 기준 제61조 적용 유보를 한 국가는 없었으며, 하기 9개국이 제61조 적용대상임
– 기니바사우, 말라위, 상투메프린시페, 소말리아, 카보베르데,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기니, 시리아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 본회의에서는 상기 국가에 대한 투표권 상실 및 분담금 납부 촉구

의제 7	제27차 총회 이후 기구 업무 현황에 대한 이사회 보고사항

1. 기니만에서의 해적, 무장강도 및 불법해상강도 방지

☐ **의제 주요내용**
○ 총회전 열린 제27차 특별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 준비한 총회 결의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수정된 최종 결의서 초안을 총회에 제출함

○ 결의서는 모든 당사국의 적절한 기니만 해적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기존 내용을 대신하여, 해적 및 무장 강도의 위협에 대한 기니만 연안국의 책임있는 리더쉽 역할 인식 및 지역 내 연관 기구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정됨

- 기니만의 해상지배권 증대
- 해적, 무장강도 및 기타 불법해상행위 방지
- 해상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제제 및 재판할 수 있는 역량

○ 상기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서는 각 정부의 구조 수색 기구, 정보 공유센터 등을 통해 기니만 항해선박에게 불법행위 및 위협 행위에 대한 정보를 즉각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하기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음

- UN 안보리에서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결의서 사본을 UN 사무총장에게 송부할 것
- 기니만 항해선박의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현황을 이사회 및 5개 위원회에 보고할 것
- 기니만 연안 국가에 대한 기술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있는 정부와 관련 기구와 그 절차 및 수단을 강구할 것
- 관련 기구, 국가간 기니만 해적, 무장강도 및 기타 불법해상행위 방지를 위한 활동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구의 노력을 지속할 것
- 서·중앙 아프리카의 지역 통합 연안경비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 서·중앙 아프리카내 해적, 무장강도 및 기타 불법해상행위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에 서명하거나 서명을 고려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구의 노력을 지속할 것

○ 마지막으로 결의서에는 기니만 항해선박들에 대한 해적, 무장강도, 기타불법행위 및 위협행위와 관련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발생 시 조치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함

- MSC에는 제안된 새로운 결의서 규정 및 관련된 결의서 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 LEG, TC 및 FAL 위원회에는 해적관련하여 MSC의 요청이 있을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논의 내용 및 결과

○ 27차 특별이사회 중 영국, 그리스, 바하마, 파나마 등 주요 이사국들은 총회 결의서 초안이 기니만 연안국들의 책임성 있는 역할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 및 문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발언하였고, 이에 이사회 의장은 이를 받아들여 신속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영국을 작업반장으로 하는 임시 초안 준비 작업반을 개최함

- 작업반에는 아국을 비롯한 30여개 이사국들이 참석하여, 총회 제출을 위한 최종 결의안을 마련하였고, 이사국은 이를 최종 승인함

○ 총회 본회의에서는 본 결의서의 필요성을 제안한 그리스 및 결의서 초안을 준비한 사무총장 그리고 이를 검토한 이사회 초안 검토 작업반에 감사를 표하고, 이미 27차 특별이사회 기간 중 충분히 논의되어 제출된 총회 결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견 없이 채택함

의제 8	전략, 계획 및 개선

☐ **의제 주요내용**

○ 지난 총회에서 '12~'17년(6년) 기간에 대한 IMO 전략계획 결의서(Res.A.1037(27))를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Mission Statement
- 해운 및 국제해사계의 동향 및 발전, 이와 관련된 IMO의 도전과제
- '12~'17년 기간동안 IMO가 취해야 할 전략 방향 (Strategic direction)
- Performance indicator

○ IMO 전략계획 결의서(Res.A.1037(27))에 따라 이사회 및 사무총장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함

- IMO 전략계획의 이행경과에 대한 검토 및 최신화를 위한 메커니즘 분석 및 이행경과 감시
- 매 2년마다 IMO 전략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 IMO 전략계획 이행경과에 대한 이사회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C108은 기존형태의 planned outputs 현황 보고를 중단키로 결정
- C109는 GISIS를 활용하여 planned output을 보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고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IMO 전략계획 작업반에게 동 시범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개선필요사항을 제안하도록 지시함
- C109는 이에 더하여, '14~'15년 기간에 대한 planned output의 우선순위 선정에 임시로 사용할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1회성 작업반을 개최하였고, 동 작업반은 우선순위 선정에 사용할 방법론을 개발하여 C110에 제출함
- 그러나 C110은 개발된 방법론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충분치 못하다고 결정하고 위험성검토 및 관리 작업반에 동 사항을 전달하여 추가 검토하도록 지시함
- 13차 IMO 전략계획 작업반 결과가 C/ES.27에 제출되었으며 C/ES.27은 아래와 같이 3개의 총회 결의서 초안을 A 28에 제출함

(1) 6개년('14~'19) IMO 전략계획
(2) 2개년('14~'15) 우선순위 작업계획
(3) 전략계획 및 우선순위 작업계획 적용 지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 본회의장에서 6개년 IMO 전략계획 및 적용지침을 원안대로 채택하였고,

○ 2개년 우선순위 작업계획 또한 수정 없이 원안대로 채택함

의제 9	자발적 IMO 회원국 감사제도

☐ **의제 주요내용**

○ III Code 개발

- 기존 자발적 감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던 IMO 강제협약 이행코드를 개정하고 III Code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총회결의서로 제출됨. 향후 감사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임

○ 감사의 체계 및 절차

- 감사제도 합동작업반에서 완성된 감사의 체계 및 절차에 관한 총회결의서 초안이 제110차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됨
- 동 결의서가 채택되면 기존 결의서인 Res.A.974(24)는 폐지되며 결의서 채택 이후 수행되는 모든 감사는 새로이 채택된 결의서에 따라야 함

○ 강제협약의 개정
- III Code 및 감사제도를 강제화 하기 위하여 MSC는 아래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14년 예정인 MSC 93에서 최종 채택 예정임
  (1) SOLAS
  (2) ICLL 1988 프로토콜
  (3) STCW
- 같은 목적으로 MEPC는 MARPOL 협약 부속서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14년 예정인 MEPC 66에서 최종 채택예정임
- 아래협약은 총회 결의서로 채택되어야 하므로 MSC에서 개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총회 채택을 위해 15번 의제 하에 개정안이 제출됨
  (1) 1966 ICLL
  (2) 1969 Tonnage Convention
  (3) 1972 COLREG

○ 과도기
- III Code 및 감사제도 체계 및 절차 개정안이 금번 총회에서 채택되면, 이후부터 강제감사제도 발효일까지의 기간(이하 과도기)동안 금번 총회에서 채택된 III Code 및 감사제도 체계 및 절차 개정안이 감사의 기준으로 사용되도록 고려되어야 함
- 과도기 기간에도 자발적 회원국 감사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과도기 동안 강제감사절차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세부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감사제도 체계 및 절차 총회결의서가 기존 결의서(Res.A. 974(24))를 대체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III Code가 유일한 감사기준이 되어야 함
- 동 내용을 담은 총회결의서 초안이 동 문서 Annex 2로 제출되어 채택을 요청함

○ 감사관 매뉴얼 개정
- 감사제도 합동작업반은 감사관 매뉴얼을 일부 개정하고 C110에서 승인함
- 감사제도 합동작업반의 권고에 따라 C110은 감사관 매뉴얼을 독립된 문서로 두고 Circular letter로 발행하며 사무국이 주기적 또는 필요시 개정하도록 지시함. 금번 총회 이후 감사관 매뉴얼이 Circular letter로 발행될 예정임

○ 강제감사제도를 위한 준비작업
- 감사제도 강제화 전까지 사전 준비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항이 중요함
  (1) 전체감사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14년 예정인 C112까지 이뤄질 예정임
  (2) 감사팀 구성 및 효율적이고 일관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한 감사관 자원 확보 문제로 최종 결정은 A 29('15년)에서 이뤄질 예정임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에서는 회원국 감사제도 강제화 진행경과에 주목하고, 하기 2개의 결의서 검토 후 채택함
- IMO 회원국감사제도 체계 및 절차
- 강제화 이전 과도기동안 감사제도 운영 요령

○ 일부 국가는 전체 감사 주기(7년)기간 내에 감사기준 및 체계/절차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본 총회는 동 의견에 주목함

의제 10	해사안전위원회(MS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MSC 90, 91 및 92회의에서 승인된 총회결의서 초안은 아래와 같음(총 14개)

1) ICLL, 1966 개정(MSC 90/28/Add.1/Rev.1, annex 5)
2) ICLL, 1966 개정(MSC 91/22/Add.1, annex 10)
3) COLREG, 1972 개정(MSC 91/22/Add.1, annex 11)
4) ITC, 1969 개정(MSC 91/22/Add.1, annex 12)
5) III Code 채택(MSC 91/22/Add.1, annex 16) (jointly approved by MEPC 64)
6) ISM Code 주관청 이행 지침(MSC 91/22/Add.2, annex 23)(jointly approved by MEPC 64)
7) 선내비상계획 통합시스템 구조에 대한 지침(MSC 91/22/Add.2, annex 24) (jointly approved by MEPC 64)
8) 국제협약 적용상 국내톤수 이용에 대한 권고(MSC 92/26/Add.1, annex 22) (jointly approved by MEPC 65)
9) GISIS를 통한 통지 및 회람(MSC 92/26/Add.1, annex 26) (jointly approved by FAL 38 and MEPC 65)
10) 사고조사코드 이행을 위한 조사관 지침(resolution MSC.255(84)) (MSC 92/26/ Add.1, annex 27) (jointly approved by MEPC 65)
11) 검사조화제도(HSSC)에 따른 검사지침 개정(MSC 92/26/Add.1, annex 28) (jointly approved by MEPC 65)
12) III Code 관련 협약상 의무규정(MSC 92/26/Add.1, annex 29) (jointly approved by MEPC 65)
13) IMO 선박식별번호(MSC 92/26/Add.1, annex 30)
14) Mobile Offshore Unit 인원의 훈련 및 자격증명에 대한 권고 (MOUs) (MSC 92/26/Add.2, annex 37) 추가로 MSC 90은 NAV 59에서 아래 두 개의 총회결의서 초안을 완료하고 직접 A28에 제출토록 승인하여 제출됨
15) 북해, 영국해협 및 Skagerrak 해협에서 자격있는 심해 도선사의 사용에 대한 권고(resolution A.486(XII))
16) 발틱해에서 자격있는 심해도선사의 사용에 대한 권고(resolution A.480(XII))

○ 1)~4)번 총회결의서 초안은 의제 15번에서 검토될 예정
○ MSC 91은 선박 항로지정에 대한 일반규정(resolution A.572(14)), as amended)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SN.1/Circ.319로 회람예정인 바 A 28이 승인(confirm) 해주기를 희망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1)~4)번 총회결의서 초안은 의제 15번에서 검토될 예정임
○ 5), 6), 7), 10), 13) 결의서는 일부 수정하여 채택하고, 그 외 결의서 초안은 변경 없이 채택함
○ 기타로 MSC 91에서 채택한 "선박 항로선정 일반 규정에 대한 총회결의서(Res.A.572(14))" 개정안을 확인(confirm)하고 SN.1/Circ.319로 발행함을 승인함

의제 11	법률위원회(LEG)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제100차 법률위원회에서는 선상 중대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지침인 총회 결의서 초안에 대해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해 승인함

- 금번 총회에서 상기 결의서를 검토하고 채택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결의서 주요 내용

- 회원국에게 선상범죄, 선상실종에 따른 증거수집 및 보존과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지원 시 지침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회원국에게 지침서를 사용하여 얻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

○ 지침서 주요 내용

1) 서문

⑴ 지침서의 목적은 선장이 법집행기관 및 전문조사관이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증거수집 및 보존과 의료지원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

- 선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선박이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둠

⑵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므로 법집행관처럼 행동하는 것을 금하며, 동 지침서를 선장 책임의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됨

2) 보고가 요구되는 중대범죄

⑴ 선박이 운항하는 장소의 다양한 사법권을 고려할 때, 보고가 필요한 중대 범죄의 유형 및 법적 정의 등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나,

⑵ 일반적으로 선장은 기국, 기타 이해당사국 및 법률 집행 당국을 포함하는 당사자들에게 중대범죄 발생 또는 혐의 발견시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함

3) 관련 국가 및 단체 간 협력

⑴ 기국 및 관련 국가는 범죄 조사 착수, 진행 및 결과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

4) 선장의 역할

⑴ 선장은 선박에서 중대범죄의 진술을 확보하였을 때, 기국 및 관련 국가에 가능한 빨리 보고할 것

⑵ 선장은 전문조사관이 아니며, 선종에 따라 증거수집 및 보존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인정

⑶ 선장은 피해자 보호, 증거 보존 및 관련 당국의 지시를 받을 것

⑷ 선장은 범죄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당국의 지시를 받거나 지침서의 내용을 참고할 것

5) 실종자

⑴ 실종자 발생 시 즉시 수색 작업을 하여야 하며,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선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

⑵ 국제 항공 및 해양 수색구조편람을 참고하여 적절한 수색구조 기구에 보고할 것

⑶ 범죄행위로 인해 실종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지침서를 따를 것

6) 보호 및 의료지원

⑴ 피해자들은 적절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받아야 하며, 자살 및 자해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것

⑵ 자살 및 자해시도자들의 하선이 결정됐을 경우, 선장은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 등에 협력할 것

⑶ 자살 및 자해위협이 중대범죄와 관련이 있을 경우, 선장은 지침서의 규정을 참조할 것

⑷ 지침서는 선박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실종, 피해자 보호 및 의료지원에 대해 선장이 취해야 할 방침을 담고 있으며, 제28차 총회에 제출되어 채택될 예정임

⑸ 이에 따라, 회의결과 및 지침서의 내용을 법무부, 외교부,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운선사 등 관련 부처 및 업·단체에 전파해야 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선상 중대범죄 발생 또는 선상 실종보고 후 증거의 수집 분석 및 보존과 희생자 보호 및 의료 지원에 대한 지침' 관련 총회 결의서에 대해서는 다수의 회원국이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이 식별한 편집상의 정정 필요사항*만을 수정한 후 총회 채택함

* 결의서 부속서에 첨부된 피해자, 용의자, 목격자 진술서 양식의 통일성

의제 12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제63차, 제64차 및 제6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총회 결의서(안)에 대해 채택을 요청

– 특히, "MARPOL 73/78에 의한 협약 특별해역 지정에 관한 2013년 지침"(MEPC 63/23/Add.1, annex 27) 및 "평형수관리 협약의 적용"(MEPC 65/22, annex 3) 등을 검토하고 채택할 것을 요청

○ "평형수관리 협약의 적용"과 관련하여, MEPC 65('13. 5)에서는 "평형수관리협약 적용시기 조정을 위한 총회 결의서" 초안을 아래와 같이 확정한 바 있음

– 총회결의서 채택시 별도의 기탁 또는 선언 없이 모든 IMO 회원국이 만장일치를 통해 결의서를 채택하는 안으로 합의

– 협약 발효 전 건조된 선박을 현존선으로 규정하고 현존선에 대한 평형수처리설비 탑재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로 개정안 마련

– 아국의 증서조화제도 제안을 고려하여 타 협약(IOPP)의 정기검사 시점까지 평형수처리설비 탑재를 완료하도록 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평형수관리협약 개정안을 포함하여 상정된 2개의 총회 결의서 초안은 이견 없이 채택됨

의제 13	기술협력위원회(TC) 보고서 및 권고사항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통합 기술협력 프로그램(ITCP)

– 2012~2013년 ITCP 지역 및 국제차원의 활동결과에 대한 2012년도 성과 보고로 총 33회의 자문/필요성 평가활동, 총 118회의 교육프로그램이 총 2,935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시행됨. 총 2012년 예산계획(21백만불) 대비 17백만불 지출(전체 대비 81%, 2011년 15.5백만불 지출)함

– 2014~2015년 ITCP 시행 계획으로 15개 프로그램(지역차원 및 글로벌차원)에 대한 예상 소요 금액으로 25.2백만불 배정

○ 통합기술협력프로그램 재정 보고

– 2014~2015년 TC Fund 예산 배정 및 승인 요청

1) 전체 ITCP 사업예산(25,223,000 US$) 대비 2014~2015년 사업분 배당액 15.5백만불에 대해 총회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ITCP 사업 예산 중 61% 해당

2) 2012년 4월 중반까지 6개의 다자신탁기금과 15개의 재정협정이 ITCP에 기여하고 있으며 약 6.5백만불이 다자신탁기금 및 재정협정을 통해 기부됨

3) IMO 기술협력활동에 대해 제공된 자발적 기금의 현황보고에 대해 사무국은 기부국들에게 감사 표명 및 지속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회원국에게 요청

○ ITCP와 Millenium Development Goal (MDG)와 연계
- 제25차 총회(2007)에서 채택된 결의서 A. 1006(25) 'ITCP와 MDG 연계'에 관한 TC 위원회의 이행활동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UN의 MDG 10가지 중 해운관련 5가지 MDG 연계와 관련하여 ITCP 활동 사항 보고

○ 기술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 각 IMO 지역 사무소의 활동 결과 및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별 ITCP 프로그램 이행 현황 보고로 2013년 초반까지 총 73개의 파트너십 체결(43개의 회원국 및 30개의 국제적 기구 및 협회)

○ 기술협력의 검토와 개선
- TC 62차에 사무총장에 의해 제안된 'country maritime profile'은 개발도상국의 기술협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의 식별과 적절한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해운현황에 대한 profile로 그 기대효과를 주목하고 각 회원국에게 제출 기한(2014년 봄)을 재 언급함

○ 해운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해운분야 여성지원 프로그램(IWMS)의 그간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포럼의 결과를 결의서로 채택하고, 2013년 부산에서 개최된 '여성해기인력 개발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의 결과에 대해 주목함
  1) 부산에서 개최된 동 컨퍼런스 기간 동안 'Women at the Helm' 비디오를 제작하여 첫 런칭하였으며 동 회의 결과에 대해 많은 회원국의 호응과 지지를 받음
  2) 다양한 실습선의 교육훈련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한 국제승선실습센타(Global-On-Board-Taining Center, GOBTC)와의 협력사업을 소개

○ TC 의장과 부의장 선출
- 2013년 현 의장인 케냐의 Mrs. Nancy Karigithu를 의장으로 재 선출, 부의장은 말레이시아의 Mr. Zulkurnain Ayub이 선출됨

☐ **논의 내용 및 결과**

○ 2012~2013년간의 IMO TC 활동 결과를 주목하고,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진행된 기술협력활동 결과 및 성과에 많은 회원국의 감사와 노고를 치하함

○ 기술협력위원회에서 제안한 통합기술협력사업(ITCP)와 TC Fund의 '14년~'15년간의 계획과 예산 분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별다른 이견 없이 제출된 기술협력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내용대로 승인함
- 전체 ITCP 사업예산(25,223,000 US$) 대비 2014~2015년 사업분 배당액 15.5백만불에 대해 승인 요청하였으며 이는 전체 ITCP 사업 예산 중 61% 해당
- 2014~2015년 IMO 우선순위작업계획(High-Level Action Plan)의 내용(총 29개의 작업계획 : Planned output)

의제 14	간소화위원회(FAL)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1. 간소화위원회(FAL) 보고서 및 권고사항의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글로벌통합선박정보시스템(GISIS)를 통한 통보 및 회람에 관한 총회 결의서 초안(MSC 92/26/Add.1, annex 26/MSC, MEPC와

FAL 합동그룹의 결과) 검토
- 본 총회 결의서는 IMO 강제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로 개발된 GISIS를 활용하여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결과 보고를 촉구
- 회원국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회원국, IMO 기구,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긴밀히 할 것을 촉구

○ 해상교통 촉진을 위한 E-비지니스의 개발
- 선내 서류 및 증서의 목록을 개정(FAL.2/Circ 127)
- 전자증서의 인쇄버전 사용에 관한 임시 지침(FAL.5/Circ.39)
- 업무 간소화 및 전자 업무를 위한 IMO 요약서 개정(FAL.5/Circ.40)

○ 국제무역의 촉진 및 보안의 향상
- 글로벌 공급 체인 및 해상운송 해상무역 회복 증진을 위한 조치(FAL.3/Circ.16)를 승인함. 본 지침에서는 해운 물류의 촉진과 보안을 위해 처리하고 개선해야 할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IMO 회원국과 비정부기구 간 공동 협력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FAL 의장과 부의장 선출
- FAL 38차시 의장인 Mr. Y. Melenas(러시아)와 부의장인 Mrs. M. Angsell(스웨덴)이 차기 2014년 FAL 위원회의 의장 및 부의장으로 재 선출됨

□ **논의 내용 및 결과**

○ 간소화위원회의 결과보고서, 결의서 및 권고사항에 주목하고 별다른 이견 없이 위원회 보고서 승인함
- MSC, MEPC와 FAL 합동그룹의 결과인 '글로벌통합선박정보시스템(GISIS)를 통한 통보 및 회람을 위한 총회 결의서' 초안을 별다른 이견 없이 채택함

2. FAL 협약의 이행

□ **의제 주요내용**

○ 사무총장은 FAL 협약의 개정작업을 촉진하고 IMO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하여 'FAL 협약의 이행에 대한 총회 결의서'를 이번 총회에 제출

○ 사무총장은 동 결의서의 채택을 위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모든 회원국에게 FAL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 및 협약과 관련된 작업을 우선순위로 배치할 것을 요청
- 모든 비체약국 정부에게 FAL 협약의 비준, 승인 및 동의하는 것에 대한 실천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을 촉구
- 모든 체약국 정부에게 입항, 정박, 출항, 선원, 여객, 수화물 및 화물에 대한 관리에 적용하기 위한 국내법, 국내 해상교통 간소화 프로그램, 협력 체제 및 절차들이 목적에 적합하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촉구
- 모든 체약국 정부에게 FAL 협약 VIII 조항에 따라 사무총장에게 통보된 차이점 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 사무총장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
- 모든 회원국 정부에게 FAL 협약 부속서의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통신작업반에 적극적 참여 및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독려
- 모든 회원국에게 FAL 위원회의 자국 대표단으로 대표되어지고, 국제해상교통 간소화에

영향을 주는 국경관리 및 작업의 이행에 종사하는 다수 국내기관의 대표를 확실히 해줄 것을 요청함

- FAL 위원회에게 FAL 협약의 최신화에 대한 경과 및 체약국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데 직면한 실천상의 애로사항을 다루어줄 것을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사무총장이 제안한 FAL 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결의서(Implementation of the FAL Convention)에 대해 다수회원국의 지지가 있었으며, 결의서에 대한 일부 문구 수정 작업 후 총회 채택함

3. 상륙 및 육상시설 이용에 있어 선원의 공정한 대우

☐ **의제 주요내용**

○ 이란은 선원의 상륙 및 육상시설 이용시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해 부당하거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지난 법률위원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의 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이유로 간소화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LEG 100차)

○ 간소화위원회에서는 지난 38차 회의시 검토하고 이를 총회에서 검토 및 승인하기를 요청함

○ 이에 이란은 선원의 상륙 및 육상시설 이용시 공정한 대우를 위한 결의서(Fair Treatment of Crew member in Respect of Shore Leave and Access 세 Shore-side Facilities) 초안을 준비하고, 총회 채택을 요청함

- 선원의 상륙 및 육상시설 이용시 선원 기본권리임을 상기하고, 차별적 대우가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고, SOLAS 제11-2장과 ISPS Code를 포함한 국제기구에서의 협약 개정시 선원의 상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별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결의서 초안은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후 승인 총회 채택함

- 초안 결의서 중 단락 6의 '선원의 상륙 및 육상시설 이용시 불법, 부당한 대우로 인한 손해, 손상 및 손상에 대한 기국의 보상의무' 문구 전체 삭제
- crew member와 seafarer와의 논의가 있었으나 crew member로 결정, 총회에서는 초안 결의서 중 단락 4에 누락된 crew member 삽입 등

의제 15	국제협약개정안 검토

1. 1966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 개정안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동 협약 제29조 3(a)항의 절차에 따라, MSC 90('12. 5) 및 MSC 91('12. 11)에서 국제만재흘수선협약 개정안 2건을 각각 승인하여 IMO 회원국 및 동 협약 당사국에 회람(Circular letter No.3350, 2013. 5. 3.)함

- 개정안 1 : 제47규칙 남부 동기계절대역의 북방한계 개정
- 개정안 2 : III(IMO 강제협약 이행코드)의 강제화를 위한 개정

○ 상기 2건의 개정안은 동 협약 제29조 제3항

(기구의 심의를 거친 개정)의 개정절차에 따라 MSC에서 2/3 다수에 의해 승인이 되었고, 금번 총회에서 2/3 다수에 의해 총회 결의서로 채택이 될 예정

- 금번 총회에서 결의서가 채택된다면, 당사국 정부의 2/3이 수락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발효함(제29조 제3항에 명시)

○ 상기 개정절차에도 불구하고 협약 개정안은 다른 개정 절차인 동 협약 제29조 제2항(만장일치의 수락에 의한 개정)에 의해서도 개정이 될 수 있음

○ 만약 동 협약 제29조 제2항(만장일치의 수락에 의한 개정)의 절차에 의한 개정을 원한다면, 회원국 또는 당사국 정부는 개정안 회람 요청을 사무총장에게 해야 함. 기구는 요청된 개정안을 회람시켜야 하며 그런 회람은 만장일치 수락을 위한 목적임

☐ **논의 내용 및 결과**

○ 상기 개정안은 총회기간 중 수정을 거쳐 최종 승인되었으며, 이를 채택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영국 및 라이베리아가 만장일치 절차를 위하여 개정안 회람을 요청함에 따라 만장일치 절차에 따라 발효여부가 결정될 것임

2.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개정안 검토

☐ **의제 주요내용**

○ 동 규칙 제6조 (2)항의 절차에 따라 MSC 91('12. 11)에서 개정안을 채택하였고 제28차 총회에서의 채택을 위해 IMO 회원국 및 동 협약 당사국에 회람됨(Circular letter No.3352, 2013. 4. 11.)

- 개정안의 목적은 III(IMO 강제협약 이행 코드)의 강제화에 관한 것

☐ **논의 내용 및 결과**

○ COLREG의 개정에는 만장일치의 규정이 없으므로 MSC 권고대로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15. 7. 1일까지 반대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6. 1. 1일부로 발효 예정임

의제 16	2012년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외교회의 결과 보고

☐ **의제 주요내용**

○ 사무총장은 외교회의에서 채택한 결의서 1과 어민의 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2012 케이프타운 협정서의 발효 및 이행에 관한 결의서 초안을 준비하고, 총회 채택을 요청함

○ 결의서 내용

- 2014 .02. 10까지 협정서 3조 4항의 간소화 절차에 따라 협정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당사국에 촉구
-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협정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을 하도록 1993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비당사국들 촉구
- 협정서의 효력 개시에 관계없이 요건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조치 촉구
- MSC에서 협정의 발효 관련 진행경과를 감독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
- 사무총장은 협정서 당사국이 될 수 있도록 회원국을 지원하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에서는 별도의 논의는 없었으며, 사무

총장의 보고에 주목하여 동 협정서의 가입을 촉구하는 총회 결의서를 이견 없이 채택함

의제 17	IMO 강제협약내 행정요건에 대한 정기적 검토에 관한 총회결의서에 따른 경과보고

□ **의제 주요내용**

○ 27차 총회에서는 IMO 강제협약상 행정요건의 정기적 검토에 관한 결의서 A.1043(27)을 채택하고, 운영 단락 4에 의거 이사회로 하여금 정기 검토 과정 및 권고안을 감독하고, 28차 총회에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1)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운영그룹(SG-RAR) 구성

2) 행정요건 경감을 위한 운영그룹(SG-RAR) 작업지침 마련

(1) 작업계획 개발

(2) 행정 요건 목록 추가 개발

(3) 이해당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4) 설문 응답 분석

(5) 행정요건 부담 확인

(6)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권고안 개발

(7) 이사회에 최종 보고

3) IMO 강제 협약상 행정 요건 목록

(1) 행정요건 목록 작성

- 행정요건 목록은 선주, 정부, IMO, 생산자, 설비 공급자, 해양 행정기관, 선원, 항만청, 정부대행기관, 조선소 및 수리소, 화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고려되어 560개 이상 항목으로 구성

4) 작업계획

(1) 준비 단계(A preparatory phase)

- 관련 이해당사자 확인
- 설문지 준비
- 설문 과정 및 체계 구성
- 전용 홈페이지 구축
- 연락 및 홍보 준비

(2) 설문 단계(A consultation phase)

- 2013. 05. 07 설문조사 개시
- 2013. 10. 31 설문조사 종료

(3) 분석 단계(An Analysis phase)

- 단계적 접근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결정
- 설문자료 분석을 위한 외부 용역 수행

(4) 보고 단계(A reporting phase)

- 2014년 12월 C113에 SG-RAR 최종 보고서 제출

5) 추후 행정부담

(1) 26차 특별이사회 승인사항

- 전략계획 및 상위 시행계획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GAP)에 추후 행정요건 및 부담을 식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위원회에 업무 절차서 최신화 요청
- 2012~'13 기간 동안 각 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사항을 준수하여 조직 및 업무 지침 가이드라인을 최신화하고 신규 작업과제 평가시 추후 발생할 행정 요건 및 부담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함
- 설문조사 데이터를 기초로 운영그룹은 추후 발생할 행정 요건 및 부담을 추가 검토하고, 이사회에 기타 식별사항으로 보고 예정

○ 27차 특별이사회에서는 SG-RAR 의장의 그룹 활동사항에 관한 구두보고가 있었으며, 최근 6개월간 동 그룹이 실시한 설문 응답수를 발표함

- SG-RAR 설문조사에는 총 1,090명이 참여

하였고, 응답수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SOLAS/Safety	506
MARPOL/Environment	278
STCW	111
Liability	34
Passenger Ships	17
Other	58
General	86
TOTAL	1,090

Government/Administration	428
IMO	39
Surveyor/recognized organization	2
Ship's management	505
Other	1
No specific stakeholder	115
TOTAL	1,090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 본회의 중 호주, 덴마크, 사이프러스, 칠레 등 다수 회원국 또한 동 운영그룹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이에 총회에서는 상기 경과보고를 이견 없이 승인함

의제 19	**자원관리 – '14~'15년 결과기반 예산**

☐ **의제 주요내용**

○ '14~'15년 결과기반예산안에 대한 총회결의서 초안에 대하여 승인 요청

1) MZG 정책 승인('14년 동결, '15년 2.9% 인상), 인건비 상한선을 일반예산의 75%로 결정

2) 41개 직책 폐지(33개 일반예산 직책, 8개 판매기금 직책)

3) 회의기간은 32.6주('14년 17.2주, '15년 15.4주)

4) 일반예산

– 64,304,000파운드('14년 31,686,000파운드, '15년 32,618,000파운드)

5) 회원국 분담금

– 60,232,000파운드(판매기금 잉여액 600,000파운드 및 일반예산 절감액 318,000파운드를 '15년 분담금 경감에 사용)

6) 특별비상계좌(200만 파운드) 조성

7) 기부인센티브제도(Contributions Incentive Scheme, CIS) 개선안 및 점수 배분 옵션 결정

(1) CIS 개선안

– (현행) 납부날짜에 따라 점수를 세분화하여 부여

– (변경) 납부월에 따라 점수 배분을 간소화(3가지 옵션 중 A 결정)

Proposed incentive points as compared with the current points

Current A. 629(15)	
Day	Incentive Points
0	10.00
1	9.99
2	9.98
3	9.97
4	9.96
⋮	⋮
90	8.97
⋮	⋮
180	5.00
181	4.11
⋮	⋮
359	0.01
360	0.00

Proposal			
Month	Incentive Points		
	Option A	Option B	Option C
Adv.Payment	13	13.00	13.0
January	12	10.50	11.3
February	11	8.48	9.7
March	10	6.85	8.4
April	9	5.53	7.3
May	8	4.47	6.2
June	7	3.61	5.3
July	6	2.92	4.5
August	5	2.36	3.7
September	4	1.91	3.0
October	3	1.54	2.3
November	2	1.24	1.6
December	1	1.00	1.0

(2) 운영방안 개선안

– 인센티브 지급은 2년에 한번 지급(기존 매년)

– 회원국은 이전 2개년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통보받게 되며, 인센티브 금액 용도에 대하여 아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8월 31일 기한)

① 차년도 분담금에 산입

② TC Fund 또는 다른 Fund에 기부
③ 상기 두가지 옵션 모두 선택(예, 5:5 사용, 4:6 사용 등)
- 기한 내에 상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체납금 납부에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차년도 분담금에 산입 예정임
- 차년도 분담금에 산입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한 인센티브 점수는 부여치 않음

8) 판매기금 지출예산 및 목표수입
- 지출예산 : 11,768,000파운드('14년 5,824,000파운드, '15년 5,944,600파운드)
- 목표수입 : 23,342,600파운드('14년 11,837,600파운드, '15년 11,505,000파운드)

9) 본부운영기금(Headquarters Capital Fund)
- 2,312,000파운드('14년 930,000파운드, '15년 950,000파운드)

10) 퇴직복지기금(Termination Benefit Fund)
- 1,841,000파운드('14년 844,000 파운드, '15년 997,000 파운드)
- 모든 IMO 직원의 퇴직부담금(post-employment liabilities)을 퇴직복지기금(Termination Benefit Fund)하에서 통합 관리
- 판매기금하에 퇴직부담금은 퇴직복지기금으로 전용
- 향후 기술협력기금에 따른 프로젝트 인원 급여에 대하여 7% 부담금을 부과

11) 훈련개발기금(Training and Development Fund)
- 277,000파운드('14년 136,000파운드, '15년 141,000파운드)

12) 기술협력기금(Technical Cooperation Fund)
- 10,000,000파운드('14년 5,159,000파운드, '15년 4,841,000파운드)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에서는 '14~'15년 최종 예산안을 검토하고 예산안 관련 결의서를 최종 채택함

의제 21	외부협력 사항

1.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1)

☐ **의제 주요내용**

○ C108, C110에서는 A27이후 신규 자문지위를 신청한 하기 9개 비정부 기구에 대해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여, 8건의 신청을 반려하고, 1건은 추가 검토를 위해 27차 특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또한 C106의 결정에 따라 비정부기구의 자문지위 부여 규정 검토를 C108, C109에 걸쳐 실시하여 통합 개정본을 승인하고, 총회 승인을 위해 본 문서를 제출함

○ 27차 특별 이사회에서는 C110에서 최종 결정을 유보한 SAMI의 자문지위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함

○ 비정부기구의 자문지위 신청 검토 결과

1) C108 – 7건 모두 반려
-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ICMM)
- the Pew Environment Group (PEG)
- the International Tank Container Organisation (ITCO)
- the European Maritime Independent

Suppliers Association (EMISA)
- the Global Shippers' Forum (GSF)
-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
- the Asian Shipowners' Forum (ASF)

2) C110 1건 반려, 특별이사회 1건 반려
- Euroshore International (Euroshore) 반려
- the Security Association for the Maritime Industry (SAMI) 반려

○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IMO 규정 검토

1) C109에서는 *'The Guidlines on the Grant of Consultative Status'*와 *'the Rules Governing Relationship wit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의 개정 통합본과 수정된 질문 사항을 승인하고,

2) 새로운 통합본의 정식 명칭을 *'Rules and Guidelines for Consultative Status of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으로 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IMO 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작업반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개정 통합본을 지지함

○ 총회에서는 비정부기구의 신규자문지위 신청 관련 이사회 결정사항 및 비정부 기구와 IMO의 관계를 규정하는 IMO 규정 통합본을 이견 없이 승인함

2. 비정부기구와의 관계 (2)

☐ **의제 주요내용**

○ NGO와 IMO간 관계를 규정하는 법규[1] 10조에 의거 이사회는 NGO의 자문지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총회 전 검토하여야 함

○ 이에 C110에서는 2011. 3. 1.~2013. 2. 28. 기간 동안의 NGOs 등록현황, IMO 회의 참석 현황, 문서 제출 실적, IMO 사무국의 NGO 회의 참석 정보를 토대로 자문지위 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번 총회에 제출함

○ 또한 별도의 자문 지위 부여지침이 있는 런던협약 관련 활동을 IMO 공헌활동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차기 이사회에서는 비정부기구의 IMO 활동 평가 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

○ 활동이력이 저조한 NGO

1) IMO 자문지위 부여를 위한 지침에 의거 최근 2년간 IMO 회의 참석 이력이 없는 European Federation of Insurance Intermediaries(BIPAR)의 자문지위를 철회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고, 동 결정사항을 BIPAR에 통보함

2) 2012~2013년 활동이 미흡한 International Salvage Union(ISU), Iberoameric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IIDM)는 그 지위를 유지하되 차기 2년 동안 기구에 대한 공헌도에 주목하여 2014년 이사회에서 철회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동 결정사항을 ISU, IIDM에 통보함

○ 임시 자문지위

1) the Rules Governing Relationship with Non-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 현재 임시 자문지위에 있는 5개 비정부기구에 대해 정식 자문지위 부여하기로 최종 결정함
- Superyacht Builders Association (SYBAss)
- Pacific Environment
- Clean Shipping Coalition (CSC)
- Bureau International des Container et du Transport Intermodal (BIC)
- International Iron Metallics Association (IIMA)

○ 기타 기구
- Cruise Lines International Association (CLIA)의 조직 개편사항 참조

○ 총회 결의서 초안
- C108, 109, 110의 결정사항을 반영한 비정부기구(NGO)와의 관계에 대한 결의서 초안의 총회 승인을 요청함

☐ **논의 내용 및 결과**

○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이견 없이 승인하였고, 이사회 결정을 반영한 자문지위에 있는 비정부 기구 목록*을 작성한 총회 결의서를 채택함
- 72개 비정부 기구 승인

의제 24	IMO 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른 이사회 회원국 선출

☐ **의제 주요내용**

○ 총회는 IMO협약 제16조 및 17조에 따라 이사회의 회원국을 선출하여야 함

○ IMO 협약 제16조
-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되는 40개국의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IMO 협약 제17조

이사국	이사국의 구성 내용
A그룹	국제 해운서비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국
B그룹	국제 해상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0개국
C그룹	A그룹 및 B그룹을 제외하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해상운송이나 항해에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는 20개국

☐ **논의 내용 및 결과**

○ A그룹(10개국)과 B그룹(10개국)에는 각 10개국이 입후보함으로 별다른 입후보 선거 없이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으며, C그룹(20개국)에 24개국이 후보로 등록되어 157개국이 선거, 다음과 같이 선출됨

이사국	국 명	비고
A그룹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태리, 그리스, 영국, 미국, 파나마, 러시아, 노르웨이	경선 없이 선출
B그룹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경선 없이 선출
C그룹	싱가폴 (143), 터키(136), 남아공(134), 인도네시아(132), 사이프러스(132), 멕시코(131), 칠레(129), 필리핀(126), 호주(125), 덴마크(125), 말레이시아(124), 벨기에(120), 몰타(119), 모로코(119), 페루(114), 태국(114), 바하마(112), 라이베리아(111), 케냐(110), 자메이카(109)	투표실시 (24개국 후보 신청)

○ C그룹의 기존 이사국에 이스라엘,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4개국이 추가 입후보하여 이집트(기존 C그룹 이사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이스라엘이 탈락하였음

○ 우리나라는 제22차 총회(2001년)부터 A그룹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7회 연속 진출

제111차 이사회(12. 4) 결과

○ '14~'15년 의장단* 선출, '14년 회의(C112, C113) 잠정의제 채택 및 제112차 이사회 일정('14. 6. 16~6. 20) 확정

* Mr. Jeffrey G. Lantz(미국)와 Mr. Dumisani Ntuli(남아공)의 연임

※ 제28차 총회 채택 결의서 목록(33개)

번호	결의서 제목
A.1060(28)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SIX-YEAR PERIOD 2014 to 2019)
A.1061(28)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ND PRIORITIES FOR THE 2014-2015 BIENNIUM
A.1062(28)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THE STRATEGIC PLAN AND THE HIGH-LEVEL ACTION PLAN OF THE ORGANIZATION
A.1063(28)	RESULTS-BASED BUDGET FOR THE 2014-2015 BIENNIUM
A.1064(28)	ARREARS OF CONTRIBUTIONS
A.1065(28)	PRESENTATION OF ACCOUNTS AND AUDIT REPORTS
A.1066(28)	REFORM OF THE CONTRIBUTIONS INCENTIVE SCHEME
A.1067(28)	FRAMEWORK AND PROCEDURES FOR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1068(28)	TRANSITION FROM THE VOLUNTARY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TO THE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A.1069(28)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PIRACY, ARMED ROBBERY AGAINST SHIPS AND ILLICIT MARITIME ACTIVITY IN THE GULF OF GUINEA
A.1070(28)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III CODE)
A.1071(28)	REVISED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ISM) CODE BY ADMINISTRATIONS
A.1072(28)	REVISED GUIDELINES FOR A STRUCTURE OF AN INTEGRATED SYSTEM OF CONTINGENCY PLANNING FOR SHIPBOARD EMERGENCIES
A.1073(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NATIONAL TONNAGE IN APPLY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A.1074(28)	NOTIFICATION AND CIRCULATION THROUGH THE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 (GISIS)
A.1075(28)	GUIDELINES TO ASSIST INVESTIGATOR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ASUALTY INVESTIGA-TION CODE (RESOLUTION MSC.255(84))
A.1076(28)	AMENDMENTS TO THE SURVEY GUIDELINES UNDER THE HARMONIZED SYSTEM OF SURVEY AND CERTIFICATION (HSSC), 2011
A.1077(28)	2013 NON-EXHAUSTIVE LIST OF OBLIGATIONS UNDER INSTRUMENTS RELEVANT TO THE IMO INSTRUMENTS IMPLEMENTATION CODE

번호	결의서 제목
A.1078(28)	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CHEME
A.1079(28)	RECOMMENDATIONS FOR THE TRAINING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 ON MOBILE OFFSHORE UNITS (MOUs)
A.1080(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QUALIFIED DEEP-SEA PILOTS IN THE NORTH SEA, ENGLISH CHANNEL AND SKAGERRAK
A.1081(28)	RECOMMENDATION ON THE USE OF ADEQUATELY DEEP-SEA PILOTS IN THE BALTIC SEA
A.1082(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3(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OAD LINES, 1966
A.1084(28)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ONNAGE MEASUREMENT OF SHIPS, 1969
A.1085(28)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A.1086(28)	ENTRY INTO FORCE AND IMPLEMENTATION OF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A.1087(28)	2013 GUIDELINES FOR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EAS UNDER MARPOL
A.1088(28)	APP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A.1089(28)	IMPLEMENTATION OF THE FACILITATION CONVENTION
A.1090(28)	FAIR TREATMENT OF CREW MEMBERS IN RESPECT OF SHORE LEAVE AND ACCESS TO SHORE-SIDE FACILITIES
A.1091(28)	GUIDELINES ON THE PRESERVATION AND COLLECTION OF EVIDENCE FOLLOWING AN ALLEGATION OF A SERIOUS CRIME HAVING TAKEN PLACE ON BOARD A SHIP OR FOLLOWING A REPORT OF A MISSING PERSON FROM A SHIP, AND PASTORAL AND MEDICAL CARE OF PERSONS AFFECTED
A.1092(28)	RELATIONS WIT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